

의안번호	제 2015 - 1 호
보 고 연 월 일	2015. 2. 2. (제6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87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1
5.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4
6.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8
7.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11
8.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14
II. 향후 일정	18

별첨	강동혁,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강동혁,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황병헌,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황병헌,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수정검토”
	황병헌,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강동혁,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강동혁,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강동혁,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강동혁,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황병헌,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황병헌,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I. 제87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1. 26.(월) 15: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동혁, 강수진, 김현아, 김혜정, 노수환,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4.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 (1)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의 특별가중인자가 본범의 교사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의규정 수정·보완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여 본범 교사죄도 성립하는 경우 다시 이를 장물범죄의 양형인자로 중복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로 의견일치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보완

- 행위자인자인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와 행위인자인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을 보완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로 의견일치
- 「형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감경 행위인자로 반영한다. 다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의 특별감경 행위인자를 적용할 뿐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는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가) 조직적 범행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나)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을 별도의 유형으로 두지 말고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자는 의견
- (다)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의 감경, 기본영역 하한을 상향하자는 의견
- (라)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의 영역별 권고형량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마)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상향하자는 의견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가) 행위태양에 따라 ‘취득·알선’과 ‘보관·양도·운반’을 특별양형인자 반영 방식으로 형량에 차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나)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거나 일반감경인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라)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마)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의 인자가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범죄에만 적용되는 인자인지,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인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

- (바)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인자를 행위인자가 아닌 행위자인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인적관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사)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 범행인 경우(2유형)’를 특별양형인자에서 삭제하자는 의견
- (아) 절도범죄에 있어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 포함되나 장물범죄에서는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될 때 일반가중인자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중복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
- (차) 핸드폰을 조직적으로 팔아넘기는 범죄에 대한 가중 요건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카) 일반장물 유형에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상습·누범장물 유형에서도 가중요소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타) 일반양형인자로 ‘취득이익의 경미’ 또는 ‘취득이익의 다액’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파)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5.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 (1) 중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권리행사방해 등’ 2유형(점

유강취/준점유강취)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고 중권리행사방해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중강요죄와의 형량 균형 도모

○ 현행 양형기준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존재

■ 강요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5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강요	10년 ↓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상습·누범·특수 강요	2년 ↑ / 3년 ↑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5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 강취	7년 ↓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강제집행면탈	3년 ↓	- 8월	6월 - 1년	8월 - 2년

- 형법 제326조는 강요(제324조) 또는 점유강취·준점유강취(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 강요에 대한 위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강요’로, 점유강취·준점유강취에 대한 위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권리행사방해’로 칭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양형기준안은 강요 2유형(중강요)과 권리행사방해 등 2유형(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면서, 중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 즉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권리행사방해 등 2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그 결과 다른 가중, 감경인자가 없는 경우 중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권리행사방해 등 2유형의 가중영역(1년4월-3년)이, 중강요죄의 경우 강요 2유형의 기본영역(8월-2년)이 적용되어 형량범위에 불균형이 초래됨
-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2유형)’를 ‘권리행사방해 등’ 2유형(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는 대신, 종전의 ‘점유강취/준점유강취’ 소유형을 ‘점유강취/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형량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로 의견일치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5년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7년 ↓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3	중권리행사방해	10년 ↓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4	강제집행면탈	3년 ↓	- 8월	6월 - 1년	8월 - 2년

- 중권리행사방해 유형(3유형)의 형량범위를 강요 3유형(중강요)의 형량범위와 일치시키되, 점유강취/준점유강취 유형의 경우 실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법정형과 권리행사방해, 중권리행사방해의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형량범위를 설정
- 같은 이유로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의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

나.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가) 아청법 및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합의강요는 강요죄와 범죄의 성격이나 행위태양, 법정형을 달리하므로 ‘일반강요’와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상습범’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 강요 유형의 3유형은 ‘상습 강요, 누범 강요, 특수 강요’를 한 유형으로 포섭하였으나, 각각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정형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상습, 누범, 특수를 별도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가중·감경영역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양형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라)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는 상습·누범·특수 강요와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마) 폭력범죄 ‘중상해’ 유형의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중강요’ 유형의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바) 강요 유형 중 1유형(법정형 5년 이하), 2유형(10년 이하), 3유형(2년 이상)의 특별가중을 하여도 최대 가중영역이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정형에 상응하게 가중영역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가) 단체·흉기 강요는 3유형(특수강요)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다시 1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나)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각각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한(경미한) 경우’, ‘강요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한(경미한) 경우’로 분리하여 별개의 특별가중(감경)인자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 아동법 및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합의강요범죄의 경우,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와의 관련성을 반영한 양형인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6.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1) 경매·입찰방해 유형에서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인 ‘피해회복 노력 없음’ 제외

- 경매·입찰방해 유형에서는 보호법익, 피해자 특정 곤란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역시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한 바 있음
- 같은 이유로 ‘피해회복 노력 없음’ 또한 양형의 고려요소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일치

나. 현행안 수정과 관련해 의견대립이 있는 사항

(1) 경매·입찰방해 유형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유지여부

- 문제점

- 위 인자의 정의규정 중 ‘무모한 출혈경쟁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됨(대한변협)

- 출혈 경쟁 방지 목적은 이 범죄의 전형적인 경제적 동기가 되기 때문에 출혈경쟁 방지 목적을 감경요소로 설정할 경우 입찰 방해 행위의 다수가 감경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점 지적

○ 전문위원 논의결과

- 다수의견(이재권, 황병헌, 김현아, 오기찬, 노수환, 강수진, 최준혁)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전부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회신 의견 지적이 타당하므로 위 정의규정 삭제

- 종전에 위와 같은 사유를 무죄로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는 오래 전의 것이고 2002년 이후 유죄 취지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
⇒ 과거의 판례 내용을 반영할 만한 필연적 이유 없음

- 위 정의규정을 삭제할 경우, 남은 정의규정 예시가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주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득이 범행에 나아간 경우’ 하나에 불과하고, 위 사유는 범행동기로 참작할 만한 대표적 요소로 보기 어려움. 달리 범행에 참작할 만한 다른 사유를 찾기도 곤란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더라도 경매·입찰방해 유형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한 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음

- 소수의견(강동혁, 범현, 이진국) : 정의규정 구체화로 문제점 보완

- 종전에 무죄로 판단되었던 사유이므로 감경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

-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완 가능

-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입찰예정 가격 내에
선 무모한 출혈경쟁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를 삭제할 경우 특별가중인자(행위)와 특별감경인자(행위) 개수에 불균형 발생
- 특별가중인자 5개 ⇔ 특별감경인자 3개

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가) 업무방해 유형에서 ‘컴퓨터업무방해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자는 의견
- (나) 전반적으로 법정형에 비례하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하자는 의견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불법 목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단체’에는 ‘내부고발’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나) 특별가중인자인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에 대한 특별가중인자 설정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인자 적용과 관련하여 과잉처벌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
- (라)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행위자/기타 요소)로 ‘5년 이내 동

중(폭력전과 포함) 전과 3회 이상'이라는 요건을 신설하자는
의견

(마)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인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중 '3회 이상 벌금' 부분을 제외하자는 의견

7.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1)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중 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의 감경, 기본,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상향

○ 문제점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3년-6년	5년-8년	7년-10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중 공익건조물파괴치상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일반적 기준 2유형의 공익건조물파괴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보다 높음에도, 공익건조물파괴치상의 가중영역은 ‘1년6월-3년’으로 공익건조물파괴의 가중영역 ‘1년6월-4년’보다 상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기본영역과 감경영역의 상한도 동일하게 되어 있음
- 위와 같이 형량역전이 있거나 법정형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공익건조물파괴’ 유형보다 높게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일치
 - 감경영역 : 6월-1년 ⇨ 6월-1년6월
 - 기본영역 : 10월-2년 ⇨ 10월-2년6월
 - 가중영역 : 1년6월-3년 ⇨ 1년6월-4년6월

나.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가) 일반적 기준에서 특수매체기록 손괴 범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자는 의견
- (나) 일반적 기준에서 ‘중손괴’를 별도 유형으로 규정하자는 의견
- (다) 일반적 기준 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4유형(국가지정문화

재산상)의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하자는 의견

(라)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의 기본영역(8월-1년6월) 하한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마)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유형(문화재특수손상
치상)의 형량범위를 상향하자는 의견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다른 범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정의규정 예시 중 ‘물질적 훼손
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
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피해자의 감정상의 효용
을 침해한 경우’와 ‘일시적으로 재물을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로 분리하자는 의견

(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손괴·누범손괴·
특수손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라) 피해자에게 사실상 가족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반려동물에
대한 손괴 행위를 양형의 가중요소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 2유형)’를 양형의 감경
요소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8.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1) 범죄군 명칭을 ‘게임물 범죄’에서 ‘사행성·게임물 범죄’로 변경

- 대상범죄가 게임산업법 위반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사행행위규제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등 위반 범죄를 포괄하고 있고, 사행성 영업의 도구가 게임물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범죄군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
- 현행 ‘게임물 범죄’에서 ‘사행성·게임물 범죄’로 변경하기로 의견 일치

(2)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의 감경영역 하한 설정 : 종전(- 10월) ⇨ (4월 - 10월)

- 법정형이 3년 이하인 복표발매 중개, 복권발행(‘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중 1유형), 유사경륜·경정(‘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중 1유형)에 대하여 감경영역의 하한을 4월로 설정한 것과 비교할 때 법정형이 5년 이하인 환전 등 영업의 감경영역에 하한을 두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현행안을 유지하되, 감경영역의 하한을 4월로 설정하기로 의견일치

(3) 일반가중인자인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를 ‘단속 회피 시도’로 변경해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단속 회피를 위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의 단속회피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의규정으로

로 제시

- ‘범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반영(공청회, 대한변협)
- ‘단속 회피 시도’의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함
 -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기, 컴퓨터 등을 초기화하거나 프로그램 등을 삭제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되어 있는 ‘단속대비 시설의 설치’도 ‘단속 회피 시도’로 변경

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가) 대유형을 ‘사행행위의 주재’와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유통’ 등 2개로 분류하고, 현행 ‘도박장소 개설 등’,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을 ‘사행행위 주재’ 유형 아래의 중·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의견

(나)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을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유통’ 유형으로 하되, 현행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중 게임제작·배급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을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유

통' 유형으로 포섭하자는 의견

(다) 복권발행, 복표발매·중개('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의 1유형)는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불법스포츠도박 등' 유형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라) 정상적인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와 이미 사행적인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행성 유무에 따른 구분을 유형분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중 2유형(사행성 유기기구영업, 무허가 카지노업)과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중 2, 3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은 구성요건이 유사하고 법정형도 같으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바)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중 3유형(유사스포츠토토)은 기본영역의 형량범위(8월-2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범죄 유형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도박장소·공간 개설, 유사경륜·경정 등, 유사경마의 기본영역 형량범위(8월-1년6월)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사)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불법게임물 등 유통' 유형의 각 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이용제공, 전시·보관)은 다른 불법게임물과 구분하여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중 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은 환전의 금지가 게임물 자체의 사행화를 차단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할 것

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자)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의 3유형 중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위반범죄인 ‘게임물 이용 도박 등 사행행위 방치행위’는 도박 방조행위의 성격을 지니는 범죄로서 형량범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차)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2유형(온라인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은 ‘불법 스포츠도박 등’의 3유형(유사스포츠토토) 범죄 중 온라인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공중이용 제공 범죄와 구성요건과 죄질이 유사하므로 두 유형의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카)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의 감경영역 하한 4월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온라인 도박공간개설 범죄의 경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고 단속시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속 후 해외 도피 또는 도피 시도’를 특별 또는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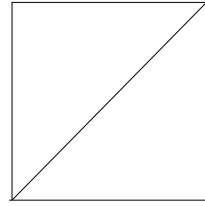
(나)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관하여 모은 금품의 액수, 수익금액, 영업기간 또는 범행횟수, 도박참가자 수 등에 대한 계량화된 구체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또는 범죄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비난가능성이 작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라)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마)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바)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사)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88차 전체회의
 - 일시
 - 2015. 2. 16.(월) 16시
 - 안건
 -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의안번호	제 2015 - 2 호
보 고 연 월 일	2015. 2. 2. (제6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5
II. 2013 연간보고서 발간 · 배포	35
1. 개요	35
2. 추진 경과	35
3. 발간 내역	35
4. 국회 보고	35
5. 기타 기관 배부	36
III.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37
1. 개요	37
2. 분석 목적	37
3. 분석 대상	37
4. 분석 내용	37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및 제11차 공청회 결과 보고	38
1. 제10차 공청회	38
2. 제11차 공청회	38

V.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40
1. 개요	40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41
VI. 2015년도 양형위원회 제5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89
1. 개요	89
2. 참석 현황	89
3. 회의 내용	89
4. 자문의견 요약	89
V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94
VIII.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	
준 공개(의결 후 절차)	95
1. 개요	95
2. 관련 규정	95
3. 공개 방법	96
4. 추진 일정	96
IX.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97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97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98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4. 9. 30.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4. 9. 3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50	24	74
	강도살인미수	19	3	22
	살인	1,361	201	1,562
	살인교사	3	1	4
	살인미수	1,876	261	2,137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35	4	39
	존속살해	135	23	158
	존속살해미수	67	8	75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1	0	1
	전체	3,554	525	4,079
뇌물범죄	뇌물공여	2,423	278	2,701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2	1	3
	뇌물공여의사표시	4	6	10
	뇌물수수	1,675	231	1,906
	뇌물약속	2	0	2
	뇌물요구	2	2	4
	부정처사후수뢰	83	14	97
	수뢰후부정처사	100	10	11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제3자뇌물교부	128	10	138
	제3자뇌물취득	136	16	152
	특가법(뇌물)	553	82	635
	특가법(뇌물)교사	0	1	1
	전체	5,110	651	5,761
성범죄	강간	983	235	1,218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754	81	835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291	120	1,411
	강도강간	79	10	89
	강제추행	7,009	2,326	9,335
	강제추행상해	163	14	177
	강제추행치상	517	60	577
	미성년자의제강간	96	9	105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9	1	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5	18	12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1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	1	1
	상습강제추행	7	4	11
	상습준강제추행	3	0	3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15	28	743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71	6	177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200	3	203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86	7	193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95	14	40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9	5	14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83	7	19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1	18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9	6	55
	성폭력범죄(특수강간)	490	10	500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33	17	350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2	0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4	2	12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86	51	93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510	204	71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3	7	2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71	24	9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1	17	3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41	13	5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434	57	49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38	36	47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127	41	16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56	101	25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30	13	34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99	37	13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34	16	5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20	14	3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91	48	13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4	2	6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76	14	90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996	165	1,16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0	6	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0	8	8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1	42	30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05	73	37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8	10	3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67	16	8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044	130	1,17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02	33	33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59	30	18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443	81	52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36	12	4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018	186	3,20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9	10	1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13	20	3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950	452	1,40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10	45	15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00	34	13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42	24	6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32	10	4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5	2	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91	102	29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0	5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0	1	1
	유사강간	32	44	76
	유사강간상해	3	3	6
	유사강간치상	6	8	14
	준강간	570	174	744
	준강간교사	0	1	1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68	10	78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준강제추행	1,036	339	1,375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8	0	18
	준유사강간	16	24	40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27,753	5,794	33,547
강도범죄	강도	633	60	693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2,774	314	3,088
	강도상해교사	3	0	3
	강도치사	20	2	22
	강도치상	210	35	245
	준강도	351	45	396
	준특수강도	58	9	67
	특가법(강도)	36	2	38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8	13	61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2,351	260	2,611
	전체	6,555	740	7,295
횡령·배임 범죄	배임	2,159	291	2,450
	배임교사	1	0	1
	업무상배임	2,681	361	3,042
	업무상배임교사	0	1	1
	업무상횡령	11,214	1,605	12,819
	업무상횡령교사	0	1	1
	특경가법(배임)	1,346	156	1,502
	특경가법(배임)교사	1	0	1
	특경가법(횡령)	1,863	239	2,10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0,063	1,456	11,519
	횡령교사	0	1	1
	전체	29,329	4,111	33,440
위증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5	0	5
	모해위증	83	4	87
	모해위증교사	2	2	4
	위증	5,421	702	6,123
	위증교사	752	104	856
	전체	6,263	812	7,075
무고범죄	무고	7,881	938	8,819
	무고교사	32	14	46
	특가법(무고)	32	1	33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7,946	953	8,899
총계		86,510	13,586	100,096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4. 9. 30.)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약취·유인 범죄	간음약취	3	3	6
	간음유인	3	7	10
	미성년자약취	35	13	48
	미성년자유인	27	4	31
	영리약취	6	1	7
	영리유인	14	19	33
	추행유인	4	0	4
	특가법(약취·유인)	23	1	24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8	1	5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1	0	1
	전체	174	49	223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사기범죄	사기	90,307	27,685	117,992
	사기교사	5	0	5
	상습사기	348	82	430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1	3
	준사기	44	32	76
	컴퓨터등사용사기	1,040	433	1,473
	특경가법(사기)	2,181	708	2,889
	전체	93,927	28,941	122,868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77	25	102
	산림보호법위반	126	32	1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528	133	661
	상습절도	4	2	6
	상습특수절도	2	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390	404	1,7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3	0	3
	야간방실침입절도	139	29	168
	야간선박침입절도	4	1	5
	야간주거침입절도	913	223	1,136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16,872	4,817	21,689
	절도교사	51	14	65
	특가법(산림)	88	30	118
	특가법(절도)	5,358	1,559	6,917
	특수절도	8,693	2,029	10,722
	특수절도교사	20	13	33
	전체	34,269	9,311	43,580
공문서범죄	공문서변조	228	53	281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970	192	1,162
	공문서부정행사교사	9	2	11
	공문서위조	782	196	978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공문서위조교사	5	1	6
	공전자기록등변작	1	1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174	311	1,485
	공전자기록등위작	34	11	45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424	80	504
	변조공문서행사	17	1	18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74	5	79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30	5	35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83	28	111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112	54	166
	허위공문서작성교사	0	1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9	0	9
	전체	3,959	941	4,900
사문서범죄	변조사문서행사	157	31	188
	사도화변조	0	1	1
	사도화위조	2	0	2
	사문서변조	168	47	215
	사문서변조교사	0	1	1
	사문서부정행사	10	2	12
	사문서위조	3,558	1,015	4,573
	사문서위조교사	13	3	16
	사전자기기록등변작	10	0	10
	사전자기기록등위작	49	9	58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2	0	2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3	0	3
	위조사문서행사	260	43	30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44	25	169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0	0	10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허위작성진단서행사	6	2	8
	허위진단서작성	32	1	33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4,426	1,180	5,606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12,356	5,592	17,948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1	4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363	294	1,657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30	4	34
	공용서류손상	122	41	163
	공용서류은닉	10	1	11
	공용전자기록등손상	4	0	4
	위계공무집행방해	619	208	827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2	1	3
	특수공무집행방해	758	284	1,0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2	97	519
	특수공용물건손상	25	4	29
	전체	15,723	6,527	22,250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40	88	42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486	456	1,94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4	2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31	11	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720	122	8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1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1	8	29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3,838	1,175	5,013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1	4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약사법위반	904	270	1,174
	의료법위반	1,955	447	2,402
	의료법위반교사	3	3	6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5	0	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463	208	6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58	18	76
	전체	9,852	2,809	12,661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431	338	1,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12	47	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8,164	2,253	10,4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960	133	1,093
	특가법(마약)	2	0	2
	특가법(향정)	30	19	49
	전체	10,699	2,790	13,489
총계		173,029	52,548	225,577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4. 9. 30.)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469	260	72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36	30	66
	증권거래법위반	67	14	81
	특경가법(수재등)	62	35	97
	특경가법(알선수재)	170	88	258
	특경가법(증재등)	50	32	82
	전체	854	459	1,313
지식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37	16	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3	0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36	25	16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0	1	1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상표법위반	1,342	531	1,873
	실용신안법위반	11	7	18
	저작권법위반	991	380	1,371
	특허법위반	26	7	33
	전체	2,556	967	3,523
폭력범죄	상습상해	0	1	1
	상습존속폭행	1	0	1
	상습폭행	4	1	5
	상해	24,427	11,079	35,506
	상해교사	4	2	6
	상해치사	143	48	191
	존속상해	153	64	217
	존속상해치사	10	5	15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51	18	69
	존속폭행치사	3	1	4
	존속폭행치상	3	1	4
	존속협박	11	5	16
	중상해	80	29	109
	특가법(보복범죄등)	45	1	46
	특가법(보복상해등)	38	37	75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0	2	2
	특가법(보복폭행등)	39	30	69
	특가법(보복협박등)	72	69	141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168	623	1,791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02	22	124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5	0	5
	특수협박	137	35	172
	폭처법(공동상해)	6,265	2,532	8,797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폭처법(공동상해)교사	2	2	4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0	4	14
	폭처법(공동폭행)	1,474	749	2,223
	폭처법(공동폭행)교사	5	1	6
	폭처법(공동협박)	184	77	261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0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7	4	1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9	2	1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1	2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7	8	35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1	1	1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1	0	11
	폭처법(상습상해)	143	32	175
	폭처법(상습존속상해)	6	2	8
	폭처법(상습존속폭행)	7	0	7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6	4	10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2	1	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5	1	6
	폭처법(상습폭행)	108	47	155
	폭처법(상습협박)	17	4	21
	폭처법(야간·공동상해)	19	7	26
	폭처법(야간·공동폭행)	0	2	2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8,435	3,661	12,096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9	4	13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44	19	63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8	3	1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22	9	31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1,869	985	2,854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2	1	3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2,301	1,153	3,454
	폭행	9,774	5,218	14,992
	폭행치사	123	40	163
	폭행치상	322	190	512
	협박	1,342	618	1,960
	협박교사	2	0	2
	전체	59,081	27,455	86,536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386	7,416	23,802
	특가법(도주차량)	7,805	3,310	11,115
	특가법(도주차량)교사	1	1	2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5,069	1,965	7,034
	전체	29,261	12,692	41,953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986	1,077	2,06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4	56	60
	전체	990	1,133	2,123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780	1,085	1,865
	지방세기본법위반	6	5	11
	특가법(조세)	45	51	96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56	196	352
	전체	987	1,337	2,324
공갈범죄	공갈	207	269	476
	특경가법(공갈)	5	13	18
	폭처법(공동공갈)	267	370	637
	폭처법(공동공갈)교사	2	0	2
	폭처법(상습공갈)	7	16	2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공갈)	0	1	1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9	26	35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0	1	1
	전체	498	696	1,194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1	4	5
	공용자동차방화	1	0	1
	일반건조물방화	26	27	53
	일반물건방화	21	41	62
	일반자동차방화	21	24	45
	현존건조물방화	11	13	24
	현존건조물방화치상	0	8	8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0	1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0	1	1
	현주건조물방화	86	86	17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	1	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0	11	21
	전체	180	217	397
총계		94,407	44,956	139,363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접수건수임.

라. 제4기 대상범죄(2014. 7. 1. ~ 2014. 9. 30.)

범죄	세부죄명	2014. 7. 1. ~ 9. 30.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73
	배임증재	83
	전체	156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66
	전체	66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69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72

범죄	세부죄명	2014. 7. 1. ~ 9. 3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21
	전체	835
총계		1,057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014. 9. 30.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4. 9.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3. 12.	살인범죄	수	3,170	2	0	3,172
		비율	99.9%	0.1%	0.0%	100.0%
	뇌물범죄	수	2,263	1,431	75	3,769
		비율	60.0%	38.0%	2.0%	100.0%
	성범죄	수	16,469	3,481	1,748	21,698
		비율	75.9%	16.0%	8.1%	100.0%
	강도범죄	수	5,709	38	0	5,747
		비율	99.3%	0.7%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3,721	16,531	4,617	24,869
		비율	15.0%	66.5%	18.6%	100.0%
	위증범죄	수	114	4,264	1,070	5,448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무고범죄	비율	2.1%	78.3%	19.6%	100.0%
		수	223	4,788	1,516	6,527
		비율	3.4%	73.4%	23.2%	100.0%
	전체	수	31,669	30,535	9,026	71,230
		비율	44.5%	42.9%	12.7%	100.0%
2014. 1. ~ 2014. 9.	살인범죄	수	513	1	0	514
		비율	99.8%	0.2%	0.0%	100.0%
	뇌물범죄	수	335	220	8	563
		비율	59.5%	39.1%	1.4%	100.0%
	성범죄	수	3,489	2,447	210	6,146
		비율	56.8%	39.8%	3.4%	100.0%
	강도범죄	수	719	8	0	727
		비율	98.9%	1.1%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660	2,807	988	4,455
		비율	14.8%	63.0%	22.2%	100.0%
	위증범죄	수	26	618	306	950
		비율	2.7%	65.1%	32.2%	100.0%
	무고범죄	수	35	723	321	1,079
		비율	3.2%	67.0%	29.7%	100.0%
	전체	수	5,777	6,824	1,833	14,434
		비율	40.0%	47.3%	12.7%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4. 9.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3. 12.	약취·유인범죄	수	141	46	0	187
		비율	75.4%	24.6%	0.0%	100.0%
	사기범죄	수	4,504	52,742	16,603	73,849
		비율	6.1%	71.4%	22.5%	100.0%
	절도범죄	수	3,136	22,393	5,536	31,065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비율	10.1%	72.1%	17.8%	100.0%
	공문서범죄	수	216	1,820	852	2,888
		비율	7.5%	63.0%	29.5%	100.0%
	사문서범죄	수	193	2,528	1,289	4,010
		비율	4.8%	63.0%	32.1%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820	6,392	5,747	12,959
		비율	6.3%	49.3%	44.3%	100.0%
	식품·보건범죄	수	204	2,244	5,366	7,814
		비율	2.6%	28.7%	68.7%	100.0%
	마약범죄	수	1,342	7,870	159	9,371
		비율	14.3%	84.0%	1.7%	100.0%
	전체	수	10,556	96,035	35,552	142,143
		비율	7.4%	67.6%	25.0%	100.0%
2014. 1. ~ 2014. 9.	약취·유인범죄	수	23	16	2	41
		비율	56.1%	39.0%	4.9%	100.0%
	사기범죄	수	1,771	22,983	6,361	31,115
		비율	5.7%	73.9%	20.4%	100.0%
	절도범죄	수	1,022	7,110	2,279	10,411
		비율	9.8%	68.3%	21.9%	100.0%
	공문서범죄	수	46	739	262	1,047
		비율	4.4%	70.6%	25.0%	100.0%
	사문서범죄	수	52	1,114	539	1,705
		비율	3.0%	65.3%	31.6%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253	4,279	1,737	6,269
		비율	4.0%	68.3%	27.7%	100.0%
	식품·보건범죄	수	72	1,104	2,320	3,496
		비율	2.1%	31.6%	66.4%	100.0%
	마약범죄	수	523	2,350	70	2,943
		비율	17.8%	79.9%	2.4%	100.0%
	전체	수	3,762	39,695	13,570	57,027
		비율	6.6%	69.6%	23.8%	100.0%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4. 9.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3. 12.	증권·금융범죄	수	178	212	44	434
		비율	41.0%	48.8%	10.1%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5	732	1,305	2,042
		비율	0.2%	35.8%	63.9%	100.0%
	폭력범죄	수	2,256	22,434	23,442	48,132
		비율	4.7%	46.6%	48.7%	100.0%
	교통범죄	수	1,433	15,821	7,585	24,839
		비율	5.8%	63.7%	30.5%	100.0%
	선거범죄	수	852	37	0	889
		비율	95.8%	4.2%	0.0%	100.0%
	조세범죄	수	23	169	105	297
		비율	7.7%	56.9%	35.4%	100.0%
	공갈범죄	수	23	174	39	236
		비율	9.7%	73.7%	16.5%	100.0%
	방화범죄	수	106	4	0	110
		비율	96.4%	3.6%	0.0%	100.0%
	전체	수	4,876	39,583	32,520	76,979
		비율	6.3%	51.4%	42.2%	100.0%
2014. 1. ~ 2014. 9.	증권·금융범죄	수	158	218	35	411
		비율	38.4%	53.0%	8.5%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6	440	774	1,220
		비율	0.5%	36.1%	63.4%	100.0%
	폭력범죄	수	1,164	15,265	14,376	30,805
		비율	3.8%	49.6%	46.7%	100.0%
	교통범죄	수	65	9,725	4,462	14,252
		비율	0.5%	68.2%	31.3%	100.0%
	선거범죄	수	687	29	0	716
		비율	95.9%	4.1%	0.0%	100.0%
	조세범죄	수	318	636	339	1,293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공갈범죄	비율	24.6%	49.2%	26.2%	100.0%
		수	51	553	115	719
	방화범죄	비율	7.1%	76.9%	16.0%	100.0%
		수	248	3	2	253
	전체	비율	98.0%	1.2%	0.8%	100.0%
		수	2,697	26,869	20,103	49,669
		비율	5.4%	54.1%	40.5%	100.0%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4. 9. 3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4. 7. ~ 2014. 9.	배임수증재범죄	수	6	38	1	45
		비율	13.3%	84.4%	2.2%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2	20	1	23
		비율	8.7%	87.0%	4.3%	100.0%
	성매매범죄	수	19	140	59	218
		비율	8.7%	64.2%	27.1%	100.0%
	전체	수	27	198	61	286
		비율	9.4%	69.2%	21.3%	100.0%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4. 9. 3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4	0	4
	강도살인	32	18	50
	강도살인미수	22	1	23
	살인	1,222	205	1,427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살인교사	3	0	3
	살인미수	1,680	241	1,921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4	9	3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117	29	146
	존속살해미수	59	10	69
	특가법(보복범죄등)	2	0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2	1	3
	전체	3,172	514	3,686
뇌물범죄	뇌물공여	1,766	258	2,024
	뇌물공여교사	3	0	3
	뇌물공여약속	0	1	1
	뇌물공여의사표시	0	1	1
	뇌물수수	1,178	183	1,361
	뇌물요구	1	2	3
	부정처사후수뢰	65	12	77
	수뢰후부정처사	85	13	98
	제3자뇌물교부	96	8	104
	제3자뇌물취득	105	11	116
	특가법(뇌물)	470	74	544
	전체	3,769	563	4,332
성범죄	강간	676	223	899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688	90	778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115	119	1,234
	강도강간	70	8	78
	강제추행	4,611	2,390	7,00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강제추행상해	172	17	189
	강제추행치상	484	54	538
	미성년자간음	6	1	7
	미성년자의제강간	75	11	8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0	0	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6	15	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1	2
	미성년자추행	1	0	1
	미성년자유사강간	0	0	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	2	2
	상습강제추행	3	2	5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25	47	67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2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54	3	157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59	4	163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	0	2	2
	성폭력범죄(장애인강제추행)	0	1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66	7	173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68	15	38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9	10	12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44	11	15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5	2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2	2	34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64	8	37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20	17	337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04	51	85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381	238	61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5	7	2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58	30	8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7	12	2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32	25	5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유사성행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369	46	41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361	38	399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89	42	13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14	83	19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86	33	31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93	43	13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26	17	4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15	14	2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57	47	10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4	2	6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66	11	7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886	195	1,08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7	37	25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67	69	33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31	8	3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8	24	8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793	110	90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07	28	33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30	32	16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292	78	37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29	17	4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700	247	2,94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8	4	1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6	20	2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729	491	1,2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05	67	17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83	56	13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강간)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31	22	5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33	13	4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위계등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3	2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62	155	31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1	0	1
	유사강간	9	48	57
	유사강간상해	1	8	9
	유사강간치상	2	8	10
	준강간	381	200	581
	준강간교사	0	1	1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59	11	70
	준강제추행	720	364	1,08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6	2	18
	준유사강간	8	22	30
	준유사강간치상	0	1	1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7	0	187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21,698	6,146	27,844
강도범죄	강도	575	77	652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2,266	270	2,536
	강도상해교사	2	0	2
	강도치사	29	2	31
	강도치상	187	24	211
	준강도	333	47	380
	준특수강도	53	10	63
	특가법(강도)	42	2	44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51	7	58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2,144	288	2,432
	전체	5,747	727	6,474
횡령·배임 범죄	배임	1,823	283	2,106
	배임교사	2	1	3
	업무상배임	1,910	379	2,289
	업무상배임교사	0	1	1
	업무상횡령	9,662	1,799	11,461
	특경가법(배임)	1,081	167	1,248
	특경가법(횡령)	1,688	311	1,999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특경가법(횡령)교사	0	1	1
	횡령	8,702	1,513	10,215
	횡령교사	1	0	1
	전체	24,869	4,455	29,324
위증범죄	모해위증	70	17	87
	모해위증교사	1	1	2
	위증	4,610	799	5,409
	위증교사	767	133	900
	전체	5,448	950	6,398
무고범죄	무고	6,466	1,060	7,526
	무고교사	28	15	43
	특가법(무고)	32	4	36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6,527	1,079	7,606
총계		71,230	14,434	85,664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4. 9. 30.)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약취·유인 범죄	간음약취	2	1	3
	간음유인	4	3	7
	미성년자약취	31	17	48
	미성년자유인	28	3	31
	영리약취	4	2	6
	영리유인	8	10	18
	추행유인	3	0	3
	특가법(약취·유인)	22	3	25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85	2	87
	전체	187	41	228
사기범죄	사기	70,461	29,501	99,962
	사기교사	6	0	6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상습사기	305	83	388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1	3
	준사기	37	30	67
	컴퓨터등사용사기	1,122	667	1,789
	특경가법(사기)	1,916	833	2,749
	전체	73,849	31,115	104,964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59	22	81
	산림보호법위반	96	26	1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389	168	557
	상습절도	8	3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222	412	1,6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138	41	179
	야간선박침입절도	2	2	4
	야간주거침입절도	909	316	1,225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14,215	5,195	19,410
	절도교사	41	16	57
	특가법(산림)	65	27	92
	특가법(상습절도)	3	0	3
	특가법(절도)	5,318	1,718	7,036
	특수절도	8,582	2,456	11,038
	특수절도교사	15	9	24
	전체	31,065	10,411	41,476
공문서범죄	공도화변조	1	0	1
	공문서변조	196	49	245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527	174	701
	공문서부정행사교사	6	2	8
	공문서위조	607	206	813
	공문서위조교사	4	3	7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공전자기록등변작	0	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023	399	1,4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26	17	43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1	0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320	107	427
	변조공문서행사	4	3	7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1	5
	위조공문서행사	50	35	85
	자격모용공문서작성	0	3	3
	허위공문서작성	108	47	155
	허위공문서작성교사	1	0	1
	허위공문서행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0	1
	전체	2,888	1,047	3,935
사문서 범죄	변조사문서행사	16	3	19
	사문서변조	216	82	298
	사문서부정행사	6	1	7
	사문서위조	3,449	1,482	4,931
	사문서위조교사	11	4	15
	사문서위조및동행사	0	1	1
	사문서위조행사	1	1	2
	사전자기록등변작	7	1	8
	사전자기록등위작	39	17	56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111	60	17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24	44	168
	허위작성진단서행사	2	2	4
	허위진단서작성	24	6	30
	허위진단서작성교사	1	1	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전체	4,010	1,705	5,715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9,879	5,177	15,056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물손상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272	398	1,670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4	0	4
	공용서류무효	26	7	33
	공용서류손상	107	57	164
	공용서류은닉	9	1	10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0	1
	위계공무집행방해	528	245	773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2	1	3
	특수공무집행방해	670	216	8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4	162	586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26	5	31
	전체	12,959	6,269	19,228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13	130	34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위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307	592	1,89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4	2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7	18	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594	184	7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3	8	2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1	2
	식품위생법위반	3,115	1,464	4,579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0	3
	약사법위반	698	261	959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의료법위반	1,495	523	2,018
	의료법위반교사	5	2	7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82	285	56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52	26	78
	전체	7,814	3,496	11,310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138	373	1,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89	39	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7,240	2,370	9,6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885	152	1,037
	특가법(마약)	2	1	3
	특가법(향정)	17	8	25
	전체	9,371	2,943	12,314
총계		142,143	57,027	199,170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4. 9. 30.)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17	226	44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7	7	14
	증권거래법위반	45	12	57
	특경가법(수재등)	31	30	61
	특경가법(알선수재)	104	103	207
	특경가법(증재등)	30	33	63
	전체	434	411	845
지식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22	16	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0	2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0	1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36	38	7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1	2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상표법위반	1,169	659	1,828
	실용신안법위반	6	7	13
	저작권법위반	793	481	1,274
	특허법위반	15	15	30
	전체	2,042	1,220	3,262
폭력범죄	상습존속폭행	0	1	1
	상습폭행	3	0	3
	상습협박	1	0	1
	상해	19,241	12,460	31,701
	상해교사	2	2	4
	상해치사	123	56	179
	존속상해	155	69	224
	존속상해치사	11	4	15
	존속중상해	3	0	3
	존속폭행	40	24	64
	존속폭행치사	2	1	3
	존속폭행치상	5	1	6
	존속협박	7	6	13
	중상해	62	29	91
	집단흥기등폭행	1	1	2
	특가법(보복범죄등)	159	10	169
	특가법(보복상해등)	26	45	71
	특가법(보복폭행등)	32	40	72
	특가법(보복협박등)	61	90	151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089	708	1,797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93	48	141
	특수폭행치상	2	3	5
	특수협박	118	49	167
	폭처법(공동감금)	1	0	1
	폭처법(공동상해)	5,262	3,135	8,397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폭처법(공동상해)교사	3	4	7
	폭처법(공동존속상해)	9	3	12
	폭처법(공동폭행)	1,228	852	2,080
	폭처법(공동폭행)교사	4	2	6
	폭처법(공동협박)	145	77	222
	폭처법(공동협박)교사	0	1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1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3	6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4	2	6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0	1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3	6	29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7	4	1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8	1	9
	폭처법(상습상해)	122	43	165
	폭처법(상습존속상해)	3	2	5
	폭처법(상습존속폭행)	9	1	10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6	9	15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5	0	5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5	1	6
	폭처법(상습폭행)	85	48	133
	폭처법(상습협박)	17	7	24
	폭처법(야간·공동상해)	14	11	25
	폭처법(야간·공동협박)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7,190	4,050	11,240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5	2	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45	28	73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14	6	20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28	18	46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1,552	1,037	2,589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1	3	4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2,220	1,358	3,578
	폭처법(흥기등상해)	11	0	11
	폭처법(흥기등협박)	8	0	8
	폭행	7,387	5,490	12,877
	폭행교사	3	0	3
	폭행치사	101	41	142
	폭행치상	283	226	509
	협박	1,077	683	1,760
	협박교사	1	2	3
	전체	48,132	30,805	78,937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3,830	8,420	22,250
	특가법(도주차량)	6,560	3,652	10,212
	특가법(도주차량)교사	1	1	2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4,448	2,179	6,627
	전체	24,839	14,252	39,091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884	697	1,58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5	19	24
	전체	889	716	1,605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290	1,027	1,317
	지방세법위반	0	2	2
	특가법(조세)	7	48	55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0	216	216
	전체	297	1,293	1,590
공갈범죄	공갈	89	281	370
	상습공갈	0	1	1
	특경가법(공갈)	1	5	6
	폭처법(공동공갈)	132	374	506
	폭처법(공동공갈)교사	0	3	3
	폭처법(상습공갈)	6	24	30
	폭처법(야간·공동공갈)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8	29	37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9.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0	1	1
	전체	236	719	955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0	4	4
	공용자동차방화	2	0	2
	산림보호법위반	0	3	3
	일반건조물방화	13	33	46
	일반물건방화	13	37	50
	일반자동차방화	12	32	44
	현존건조물방화	7	17	24
	현존건조물방화치사	1	0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0	6	6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0	1	1
	현존자동차방화	0	1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0	1	1
	현주건조물방화	57	99	156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	5	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3	13	16
	현주자동차방화	0	1	1
	전체	110	253	363
총계		76,979	49,669	126,648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4. 9. 30.)

범죄	세부죄명	2014. 7. 1. ~ 9. 30.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25
	배임증재	20
	전체	45
변호사법위 반범죄	변호사법위반	23
	전체	23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6

범죄	세부죄명	2014. 7. 1. ~ 9.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7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2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3
	전체	218
총계		286

II. 2013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1. 개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규정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연간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양형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하고 대외 홍보에 활용하여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2014. 3. 31. 양형위원회 제55차 회의에서 ‘2013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의안번호 제2014-14호) 의결

2. 추진 경과

- 2014. 3. 31. : 2013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계획안 의결
- 2014. 10. 하순 : 초안 완성 및 수정
- 2014. 11. 중순 : 건본 제작 및 수정
- 2014. 11. 하순 : 연간보고서 제작
- 2014. 12. : 국회보고 및 배부 완료

3. 발간 내역

- 발간 부수 : 1,60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1도 인쇄, 46배판)
 - 590쪽

4. 국회 보고

- 2014. 12.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공문 접수 후 국회 각 실을

방문하여 연간보고서 배부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 원칙

- 연간보고서 책자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 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회, 주요 도서관 등

III.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1. 개요

- 운영지원단은 1심 판결문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살인, 성범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23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책자로 발간함
- 양형기준 적용현황의 정기적인 분석 및 보고는 운영지원단의 주된 업무임(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양형기준의 적용 확인)

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분석 목적

- 양형기준 활용실태 파악
- 양형기준 준수여부 파악
- 양형기준 적용효과 파악
- 양형기준 개선사항 확인

3. 분석 대상

- 제1, 2, 3기 양형기준의 각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1심에서 선고된 1, 2, 3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4. 분석 내용

- 별도 배부한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책자 참조

IV.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및 제11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제10차 공청회

가.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4. 12. 15. 14:00~17:2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제 :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 참석자 : 총 7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 조병현, 김용대, 이진만(상임위원), 이광수, 오영근, 서보학
 - 전문위원 : 이재권(수석 전문위원), 황병현, 강동혁, 오기찬
 - 일반시민, 기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 관계자 등

나.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이진만 상임위원
- 발표자 : 이재권 수석전문위원
- 게임물범죄 지정 토론자
 - 이강훈(변호사)
 - 이정훈(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탁희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손괴범죄 지정 토론자
 - 오은경(변호사)
 - 조기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제11차 공청회

가.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4. 12. 22. 14:00 ~ 17:5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주제 :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 참석자 : 총 8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 김용대, 이진만(상임위원), 이광수, 오영근, 서보학
 - 전문위원 : 이재권(수석전문위원), 황병헌, 강동혁, 김현아, 범현
 - 일반시민, 기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 관계자 등

나.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이진만 상임위원
- 발표자 : 이재권 수석전문위원
- 권리행사방해범죄 지정 토론자
 - 이경렬(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이영임(변호사)
- 업무방해범죄 지정 토론자
 - 김정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홍환(서울신문 사회부장)
- 장물범죄 지정 토론자
 - 김혜경(계명대 법경대학 교수)
 - 박수정(변호사)

V.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60차 회의(2014. 11. 21.)에서 의결한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나. 조회 기간

- 2014. 11. 26. ~ 12. 26.

다. 회신 기관

○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 30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 27개(국회 2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 28개(국회 2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 30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 32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라. 회신자료

- 별첨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조직적 범행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
 - 사기죄 양형기준처럼 '조직적 장물취득' 유형을 독자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제품과 관련하여 조직적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직적 범행'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절도죄와의 관계상 일부 구간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필요성
 - 절도죄(6년 이하 징역)보다 장물죄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이 높은데,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범죄 형량범위는 감경과 기본영역이 절도범죄 형량범위와 동일
 - ▶ 절도죄 : 감경(4월-10월), 기본(6월-1년6월), 가중(10월-2년)
 - ▶ 장물죄 : 감경(4월-10월), 기본(6월-1년6월), 가중(1년-3년)
 - 법정형 차이를 고려하여 장물죄의 감경영역과 기본영역 형량범위를 다소 상향할 필요
 - ▶ 예컨대, 감경 : 6월-10월, 기본 : 8월-1년6월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인자를 행위인자가 아닌 행위자인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인적관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 있음
- 행위자인자인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의 명칭을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로 변경하여 행위인자인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와 중복적용 되지 않도록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
 - 정의규정에서의 설명만으로는 양형인자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어려움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의 특별가중인자 정의규정 포섭범위 확대 필요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에 대한 정의규정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의규정이 포섭하는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책임에 따른 처벌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를 특별양형인자에서 삭제
 - 이는 개개 기업에 대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되지 별도로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절도범죄에 있어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 포함되나 장물범죄에서는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즉 송유관 내 석유 절도 범죄의 장물 등에 대하여,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유형에는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따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거나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그 내용을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 필요

- 일반가중인자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 일반가중인자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의 중복 평가 위험성 배제 필요
 - 장물의 취득·알선(형법 제362조)죄 등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범죄수익의 은닉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 따라서 장물범이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장물범죄로 처벌받는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 위 일반양형인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가중요소가 적용 된다면,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고 다시 추가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함이 생길 수 있음
- 최근 실무상 분실 또는 도난된 핸드폰을 조직적으로 팔아넘기는 범죄가 많은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가중 요건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령,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를 가중 요소로 추가)
- 일반장물 유형에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상습·누범장물 유형에서도 가중요소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장물취득범죄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익취득 범행이므로, 일반양형인자로 ‘취득이익의 경미’ 또는 ‘취득이익의 다액’ 등을 도입할 필요

나. 대한변호사협회

○ 서론

- 장물범죄는 형법이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벌금형이 “5만 환”에서 “1천 500만 원”으로, “1만 5천 환”이 “500만 원”으로 개정된 것이 유일한 개정임.¹⁾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법률의 규정을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일차적, 근본적인 대응방향이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law.go.kr)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참조

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법률의 개정작업이 현실의 변화추이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는 없고, 반드시 바로 대응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점진적인 시간의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양형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도 형사사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임

- 이번에 마련된 장물범죄 양형기준안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의 양형자료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고민과 모색을 거쳐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져 봄

○ 본론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에 관하여
- '장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장물죄의 특별양형인자 행위의 가중요소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 양형인자의 정의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란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 여기서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가 본범 교사죄도 성립하는 경우 다시 이를 장물범죄의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으로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고, (본범이)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로 되지 않는 자가 장물을 취득한 경우 장물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임
- 본범의 범죄를 유발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어 별개로 양형이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물범죄의 양형을 판단할 때에 특별양형인자 행위의 가중요소로 평가된다면, 이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다소 의문임. 만약 위와 같은 특별양형인자가 본범의 교사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이를 밝혀주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생각함

- 형법상 상습장물범죄에 관한 자격정지 병과 여부에 대한 기준 부재
 - 장물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재산범죄임. 형법 제363조 제2항은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징역 집행을 종료한 후 사회에 복귀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공법상의 자격을 특별히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더욱이 토론자의 입장에서 자격정지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
 -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II. 2. 다.를 보면, 형법상 상습장물죄와 특가법 제5조의4 제4항의 상습장물죄는 구성요건을 같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무상 형법상 상습장물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상습장물죄도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렇다면 일단 이번 양형기준안이 형법상 상습장물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므로, 자격정지 병과 여부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고려하면 가급적 자격정지형을 병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법상의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검토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여, 자격정지의 양형기준을 함께 정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봄
- 그 밖의 의문점
 - 장물범죄의 유형을 일반장물의 경우 ‘일반재산’과 ‘특별재산’의 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III. 5. 유형분류 방안 나.항에 위와 같은 채택이유가 기술되어 있음. 이는 절도죄와 달리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을 일반재산과 대비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되, 절도범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해당하는 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임. 이는 특별재산에 관한 절도범죄와 장물범죄의 규정방식 및 법정형의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양형을 위해 합리적인 체계라고 생각하므로,

위와 같은 유형분류에 적극 공감함

- 특별양형인자 중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가운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로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물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어떤 사정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음. 양형기준이란 그것을 준거삼아 양형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 그렇다면 (물론 유형화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겠지만) 가급적 알기 쉽고, 적용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그런데 위 인자는 '특별재산'과 '피해'를 연결하고 있어서 더 혼란스러운 면도 있음.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일 텐데, 그럼 위 인자는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범죄 중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문임. 만일 그렇다면,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 중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는 것인지,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는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은 것인지 혼란스러움
- 기타
 - 그 밖의 항목에 대해 이견 없음

다. 법무부

① 일반장물의 경우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기준안

1. 일반장물

나. 제2유형(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장물범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장물범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죄

▪ 검토의견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죄의 엄벌 취지는 공감하나,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은 현실적으로 극히 드문 범죄유형으로 보이고, '문화재보호법 관련 유형'도 발생건수가 많지 않으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 유출'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별도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일반장물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이 타당

○ 형량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기준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 검토 의견

- 형량범위는 법정형에 상응하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위 제2 유형은 특별가중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가중 영역이 법정형(장물죄의 경우 징역 7년 이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가중 영역의 범위를 '2년 - 5년'으로 상향 필요

※ 양형기준상 2개 이상 '특별가중요소' 인자가 있는 경우, 가중 영역 상한의 1/2까지 추가 가중이 가능한 '특별가중영역'이 있는바, 현 기준안은 특별가중을 해도 6년까지밖에 선고할 수가 없어 법정형에 미달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피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물범죄에 있어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현 기준안은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만 특별감경요소로 설정하고 있는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별가중요소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이 상당

※ 기존 특별가중요소에 있는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와 별개로 설정

② 상습·누범장물의 경우 : 이견 없음

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등에 나타난 그 대상범죄의 적용대상이나, 그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그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등은 최근 세간에서 관심을 가졌던 관련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그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원칙도 준수하였다고 보여짐
- 또한 위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을 설정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

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짐

- 이에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다고 사료됨

◆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강요유형 중 2유형(중강요)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상향
 - '8월-2년' ⇨ '10월-2년'으로 하한 상향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강요 유형 중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
 - 강요 유형 중 특별양형인자로 '강요의 정도가 경미(중)한 경우'를 '폭행·협박의 정도'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의 정도'로 구분할 필요
 - 강요는 범행의 수단인 폭행, 협박과 범행의 결과인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예컨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과 공무방해를 각 별개의 특별양형인자로 구성하고 있음,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과의 균형상, 폭행, 협박의 정도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정도를 각 별개의 특별양형인자(또는 일반양형인자)로 구성

할 필요가 있음

- 권리행사방해 유형 중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규정 수정 필요
- 정의규정 예시 중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험에 처한 경우(1, 3유형)’가 있으나, 1유형은 권리행사방해죄이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3유형 강제집행면탈죄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임 ⇒ 괄호 안을 ‘(3유형)’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권리행사방해 유형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의규정 예시 수정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서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서 재판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적극적인 허위 주장과 아울러 부정한 증거 작출을 통한 권리행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가중요건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이와는 별도로 소송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을 것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소송행위(예를 들어 부인이나 증거 없는 항변의 개진 정도) 등도 과연 이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

나. 대한변호사협회

○ 양형기준 설정대상과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0조와 관련하여
- 양형기준안은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유형을 보호법익에 따라 자유에 관한 죄인 강요와 재산권에 관한 죄인 권리행사방해·점유강취·강제집행면탈 2개의 대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0조의 범죄(이하 ‘피해자등에 대한 합의강요죄’)를 강요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음
- 위와 같은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자료²⁾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

2) 6~7면

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의 범행은 아직까지 사례가 매우 드물기는 하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형법상 강요의 특별구성요건으로 그 보호법익, 범죄의 성격, 행위태양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형법상의 강요와 동일한 유형에 포섭시켜 양형기준을 설정·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고 다른 범죄들은 이미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제외함이 타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2014. 3. 31. 개최된 제5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해당 관련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60조의 강요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와 같은 이유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함

- 위 설명자료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현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고, 특히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재범방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를 양형설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함. 그러나 위 두 범죄를 권리행사방해 범죄군에 포섭하여 강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음
 - ▶ 우선 보호법익에 대해 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0조의 보호법익을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동일하게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행동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임.
 -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며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하여는 성범죄자체의 피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임
 - ▶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거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보복의 두려움, 가해자 출소 후 재 피해에

대한 우려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위협감 등은 피해자의 일상에 큰 피해를 미치게 된다는 조사결과도 쉽게 접할 수 있음. 특히 스스로를 갑작스러운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공포 자체가 피해의 극복을 어렵게 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음³⁾

- ▶ 이러한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나 보호자에 대한 합의강요를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리고 이미 두려움과 공포, 극도의 스트레스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 등을 폭행, 협박하여 받은 합의서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자가 경한 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사법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보복범죄⁴⁾의 보호법익과 마찬가지로 위 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의 자유나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의 기능의 보호⁵⁾ 또한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임
- ▶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와 보호법익이 같다고 할 수 없음
- ▶ 범죄의 성격이나 행위의 모습에서도 강요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3) 9세때 성폭행 당했던 기억으로 성인이 되어 결혼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30세 때 살해한 사건인 김부남 사건은 성폭행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 또는 제276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5)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부착명령]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가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인 데 반하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위 두 범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피해자로부터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의를 받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임. 그러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해도 폭행 또는 협박의 형태는 합의대상인 원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성적인 요소나 학대의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음. 강요죄로 분류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가 양형인자에 반영되는 것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음
- ▶ 이와 같이 위 두 범죄는 형법상 강요죄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 청소년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합의강요는 특별법에서 특히 중한 범죄로 하고 있음에도, 법익이나 행위의 유형 또는 대상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규정이 없는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와 동일한 유형에 포섭시켜 단지 가중의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강요유형의 분류와 관련하여
양형기준안은 강요범죄를 일반강요 / 중강요 / 상습·누범·특수 강요로 구분하면서 각 유형에 다음의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음.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일반강요	강요	형법 § 324	5년 ↓
		공동 강요	폭처법 § 2 ②	7년 6월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아청법 § 16, (아동학대처벌법 60조)	7년 ↓
2	중강요	중강요	형법 § 326	10년 ↓
3	상습·누범·특수 강요	상습·특수·누범 강요	폭처법 § 2조 ①, § 2조 ③, § 3조 ①	2년 ↑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폭처법 § 3 ③, § 3 ④	3년 ↑

- 그런데 이러한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있음
- 법정형이 7년 이하인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를 법정형이 5년 이하인 일반강요에 포함시킨 부분
 - ▶ 설명자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를 일반강요 유형에 포함시킨 것에 관하여
 - '선례가 많지 않고, 형법상의 기본 강요죄와 행위 객체만 다르고 행위 태양을 일부 행위로 특정해 놓았을 뿐이므로 일반강요유형에 포함시

키고 다만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특별가중양형인자로 반영한다'는 것

-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 피해자등에 대한 합의강요는 행위 객체만 다르고 행위모습을 일부 행위로 특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객체에게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며 행위모습 또한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특히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따로 중한 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반강요죄에 포함시킨 후 양형요소의 하나로 삼는 것은 무리. 그러므로 이를 일반강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난할 동기만을 문제로 삼아 가중요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해야 함⁶⁾

▶ 피해자 등에 관한 강요의 형량범위의 설정에 대하여

- 설명자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2013. 6. 19.부터 시행되었고,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0조는 2014. 9. 29. 시행되어 아직 실제선고 사례는 희소하며, 법정형의 상한(7년)이 공동강요(7년 6월)보다 낮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형량 범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가 일단 종료된 후 사법절차의 왜곡을 목적으로 별도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음
- 위 두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형량 범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가 일단 종료된 후 사법절차의 왜곡을 목적으로 별도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함.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합의강요가 빈번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결과가 있음

6) 보복범죄의 경우 각 범죄(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에서 기본범죄의 가중형태가 아니라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일반강요죄의 유형에 포함시켜 법정형이 5년인 체포 감금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상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해야 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거나 사법절차의 왜곡을 목적으로 별도의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되어야 함
- 그리고 설명자료에 의하면 “위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의 법정형의 상한(7년)이 공동강요(7년 6월)보다 낮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체포·감금죄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아울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범죄처벌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 및 하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강요죄의 93.1%, 공동강요죄의 93.8%가 기본영역에 포섭되는 2안이 아니라 분석 사례 중 강요죄의 61.3%, 공동강요죄의 69.4%가 기본영역에 포섭되는 1안을 선택한다.”고 함
- 그러나 공동강요의 법정형이 7년 6월임에도 실제형량이 낮은 것은 공동범죄의 특성상 가담의 정도가 적은 공범의 형량이 모든 행위를 스스로 실행하는 단독범의 경우보다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일 것임. 폭처법상 폭력범죄의 다른 양형기준(체포·감금, 상해, 협박, 폭행, 공갈)이 기본범죄 유형에 포섭하면서 다만 ‘2인 이상 공동’을 일반가중양형인자로 반영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며, ‘2인 이상 공동’의 성격상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므로 공동강요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이유로 법정형 7년인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를 법정형 5년인 일반강요의 유형에 포함시킨다는 가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
-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범죄는 그 기준이 법정형 5년인 일반강요가 아니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설명자료의 지적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높고 엄정한 처벌의 필요가 있으므로, 7년의 법정형인 범죄를 기준으로 상향된 형량으로 설정되어야 함
- 참고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본다면, 아동학대범처벌법 제60조는 2014. 9. 29. 시행된 것이 사실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2013. 6. 19.부터 시행된 것은 아니고 2009년 6. 9. 전면개정 시 제17조로 처음 신설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되었고 2012. 12. 18. 전문개정 되면서 제16조로 되었음.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는 그 성격상 재판 중이거나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위해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단독으로 선고를 받기보다는 원래의 범죄와 경합범의 형태로 형을 받는 경우가 많음.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도 그러한 경우인데, 선례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로 추정함⁷⁾

▶ 상습특수, 누범특수범죄를 3유형에 포함시킨 부분

- 양형기준안은 상습·누범·특수강요를 행위태양 및 수단(집단, 흉기휴대 등의 결합 여부), 상습성 및 누범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가벌성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별개의 소유형으로 구분. 그러나 상습특수·누범특수강요의 경우 상습특수·누범특수 범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형량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법정형의 차이(1년)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강요와 함께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
- 그러나 법정형의 하한이 2년과 3년이라는 1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강요를 상습 또는 누범으로 한 경우 일반강요와 가벌성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특수강요를 상습이나 누범으로 범한 경우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음. 그러므로 상습 누범 특수강요를 그 형량에 맞게 별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형법 제34조 제2항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양형인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
- 이러한 것들은 ‘가중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양형의 사유라기보다는 입법자에 의해 법정형이 숫자로 명시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또한 이러한 경우 ‘법정형 가중의 근거가 되는 범행의 수

7)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5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사건도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입니다.

단·방법이 이미 그 특수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고, 상습범의 경우에도 범죄행위에 표출된 범인의 상습성이 상습범의 성립여부를 좌우하게 되어, 특수범죄나 상습범 모두 기본적 구성요건의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⁸⁾

-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하나의 요소로 삼아 다른 특별양형인자와 상쇄될 수도 있는 지위에 둘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해 가중된 형을 기준으로 어떤 유형에 분류할 것인지, 어떤 형량범위를 설정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임
- 강요의 양형인자는 체포감금의 양형인자를 참고하여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0조의 합의강요 범죄가 권리행사방해범죄군에 포섭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들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강요 범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인자가 추가되어야 함

○ 집행유예에 대한 의견

- ▶ 달리 이견이 없음

다. 법무부

① 강요

○ 형량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기준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상습·누범·특수 강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 검토 의견
 - 제1유형(법정형 5년 이하), 제2유형(10년 이하), 제3유형(2년 이상)의

8) 최병각, “양형의 과정과 통제”, 형사정책연구 11권 3호 2000, 160면

특별가중을 하여도 최대 가중영역이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정 형에 상응하게 가중영역 범위를 조정할 필요 있음

○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

- 제3유형은 ‘상습 강요, 누범 강요, 특수 강요’를 한 유형으로 포섭하였으나, 각각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정형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바, 양형도 각각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상습, 누범, 특수를 별도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가중·감경영역을 따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양형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가중요소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가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단체·흉기 강요는 제3유형(특수강요)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1유형의 양형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 특별가중요소는 제외함이 상당

※ 기준안은 단체 또는 흉기를 이용한 강요 범행이 폭처법 특수강요로 의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1유형의 양형인자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적용법조 의율과 관련한 일부 예외적 상황에 불과하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식 양형인자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② 권리행사방해 등 : 이견 없음

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

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등에 나타난 그대상범죄의 적용대상이나, 그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그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등은 최근 세간에서 관심을 가졌던 관련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그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원칙도 준수하였다고 보여짐
- 또한 위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을 설정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짐
- 이에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

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다고 사료됨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가중인자인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변경할 필요
-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특별감경인자로 되어 있는 것과의 균형 도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에 대한 특별가중인자 설정으로 과잉처벌의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 필요
- 조직 또는 다수에 의한 업무방해는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별도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 위 경우 주도적 실행, 지휘자는 곧바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는 셈이 되어 과잉처벌이 될 우려가 없는지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행위자/기타 요소)로 '5년 이내 동종(폭력전과 포함) 전과 3회 이상'이라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지
- 소위 동네 주폭이라는 사람들은 동종의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등의 폭력 범죄를 함께 저질러온 경우가 많은데, 5년 내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면 반성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가중요소로 삼는 것이 필요
-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

○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한 의견

- 업무방해 관련,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인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중 '3회 이상 벌금'의 제외 필요성
-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이 주요부정사유라면, 이른바 '동네주폭'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위 동종전과 사유에도 해당하여 곧바로 주요부정사유 2개(주요긍정사유 없으면 실행 권고)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치료의 대상이라고 볼 측면이 많은 동네주폭에 대하여 과잉처벌이 될 우려는 없는지

- 경매·입찰방해 관련, 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인 '피해회복 노력 없음' 제외 필요성
- 경매·입찰방해 유형에서는 그 보호법익, 피해자 특정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 유형과 달리 의도적으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에서 제외하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을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피해회복 노력 없음'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있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양형기준 설정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업무방해범죄

- 양형기준안은 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 경매·입찰방해(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으로 정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양형기준안의 양형기준 설정대상은 적절하다고 생각함(다만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아래에서 별도 검토). 당초 검토 대상 범죄 중에서 업무방해죄와 구성요건이 현저하게 다른 이질적 범죄인 신용훼손죄(명예훼손에 유사)를 제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함. 노동관계법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외에는 법정형이 높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에 이르지 않는 노동관계법 규정 위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범죄로 처벌하면 되므로,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함.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죄는 입찰 방해의 특수 유형이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공동행위의 일 유형으로 입찰 등 담합) 등에 대해서도 향후 실무례가 축적될 때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로 기준을 검토하고,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컴퓨터 업무방해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이를 양형기준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일반 업무방해죄와 유사하므로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며,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양형기준안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봄. 다만, 형법상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71조 제10호 및 제48조 제3항 위반죄(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71조 제11호 및 제49조 위반죄(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등과도 유사한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유형이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제5면의 제외 의견과 같이 발생빈도가 많지 않은 컴퓨터 업무방해죄를 이번에 업무방해죄와 같은 유형에 포함시켜 양형기준안을 만들지 않고 일단 제외하며, 실무례가 축적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만들어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유형 분류에 대한 의견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다음에서 거론하는 컴퓨터 업무방해 외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음

-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별도 소유형 구분 필요성
 - 구성요건적 행위 유형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i) 정보처리장치 등의 손괴를 통한 업무 방해, (ii)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 입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 그 행위의 구성요건이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다름. 일반적인 업무방해는 국지적 피해를 일으키는 데 반해 컴퓨터 방해죄의 경우 적게는 일부 개인의 소수의 컴퓨터 등을 통한 업무처리에 방해를 주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자치단체, 기간산업의 주요 정보처리장치,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등 중요기업 조직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침입하여 부정한 명령으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방해죄와 구별되는 유형 구분을 통해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제시된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제6면에서만 '일반 업무방해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유형구분을 통해 컴퓨터 업무방해죄만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술하고, 결국은 소유형 분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냄(설명자료 제14, 15면). 이에 따라 실제 양형기준에는 일반 업무방해의 양형기준과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은 물리적 손괴가 발생하도록 하거나 혹은 컴퓨터 명령을 사용하여 손괴하는 방법이 있고,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임. 이처럼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 범죄 자체가 대부분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발생함. 따라서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기본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특

성상 일반 업무방해죄와 같은 양형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음. 그러므로 위계 위력에 의한 일반 업무방해죄와 다른 소유형으로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또한 실제 이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동기가 해킹 능력 자랑 목적이나 장난 혹은 어떠한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런데 이런 경우 물론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것으로 감경요소가 반영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범행 동기는 그와 구별되는 양형인자인 만큼 이를 반영해 줄 만한 감경요소를 두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감경요소 중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는 이러한 동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오히려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를 특별양형가중 요소로 보고 있는데, 해킹능력 자랑 목적이나 장난이 목적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 가중요소로 볼 수밖에 없음. 하지만 이것은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형인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형량의 범위 역시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의 피해자의 숫자나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가중영역의 선고형의 상한을 3년 6월로 잡는 것도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일반업무방해죄와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소유형 구분을 별도로 하고 양형인자의 정의 및 형량 범위를 달리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형량 범위에 대한 의견

- 양형기준에 제시된 형량범위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함. 다만 컴퓨터 방해죄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중영역의 상한 3년 6월이 적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그 대상 시설에 따라서는 국가나 사회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교란’이나 ‘마비’ 수준에 이르지 않는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죄행위의 결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가중영역의 상한 설정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함. 과거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의 주범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점을 참작해 볼 수 있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업무방해
 - 업무방해죄의 양형인자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함. 다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양형인자는 일반 업무방해죄와 구분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경매 입찰 방해 유형의 양형 인자
 - 양형기준안은 특별감경요소로서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중 ‘무모한 출혈경쟁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입찰 담합의 동기로 출혈 경쟁 방지 목적은 이 범죄의 전형적인 경제적 동기로 입찰 담합과 관련한 입찰 방해 범죄의 대부분의 범죄행위의 동기가 될 것임. 따라서 출혈경쟁 방지 목적을 감경요소로 해 준다면 입찰 방해 행위의 다수가 감경 영역으로 분류되게 됨. 그 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입찰 담합행위자들 전부가 감경요소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범행 당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요소를 특별양형인자로 함으로써 감경요소의 범위를 일부 재무상태가 어려운 기업에 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출혈경쟁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경우’를 감경요소에 포함시키면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산업분야의 주요기업들도 이러한 양형기준의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음.

다. 법무부

- ① 업무방해 : 이견 없음
- ② 경매·입찰방해

○ 형량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기준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경매 · 입찰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 검토의견

- 제1유형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임에도 가중영역의 범위를 '10월~2년'으로 설정한 상황
- 법정형 상한이 가중영역의 상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통상적인 가중영역 설정과 다르고, 특별가중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설정된 것으로 조정 필요
- 제1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1년 6월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등에 나타난 그대상범죄의 적용대상이나, 그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그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등은 최근 세간에서 관심을 가졌던 관련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그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원칙도 준수하였다고 보여짐

- 또한 위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을 설정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짐
- 이에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다고 사료됨

◆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손괴·누범손괴·특수손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 손괴범죄가 폭력범죄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그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편, 상해나 폭력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폭력범죄와 동일하게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피해자에게 사실상 가족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반려동물에 대한 손괴행위를 양형의 가중요소로 참작할 필요성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의 정의규정을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거나 반려동물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변경
-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 2유형)’를 양형의 감경요소로 참작할 필요성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를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 도모

나. 대한변호사협회

○ 서 론

- 손괴범죄가 문제된 사례들을 찾아보면, 다른 중한 범죄에 부수하거나 또는 수단이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외 상대방의 행위나 언동에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손괴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함. 한 가지 예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꼽을 수 있음. 이처럼 손괴범죄는 상대적으로 형이 중한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실무상 적정한 형량을 논의할 가치가 있음
- 이번 손괴범죄 양형기준안은, 기존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유형화 및 통계분석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임. 다만 이와 같은 양형기준 설정방식으로 인해, 자칫 개별범죄의 특성이나 법률상 가중

·감경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염려가 있다는 점은, 수차례 공청회 등을 포함한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 상세하게 검토하지는 않겠음

- 이하에서는, 손괴범죄 양형기준안을 목차 순서에 따라 검토하면서 손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양형기준 설정방식을 적절히 준수한 것인지 여부를 주로 살펴보고,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및 특별법과의 관계상 개별 구성요건의 규범적 의미가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음

○ 본 론

■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관하여

- 이번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 설정대상을 선별할 때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 산재한 손괴범죄 전반을 살펴본 후 형법에서는 경계침범죄,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소요죄(형법 제115조) 등 일부 범죄, 그리고 미수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각종 특별법상 손괴죄 중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 위반죄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만을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처럼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 손괴범죄의 특성, 실제 범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성 있는 타당한 논증을 거친 것으로 판단함.

■ 범죄유형 분류에 관하여

- 이상과 같이 선별된 손괴범죄를 대상으로 일반적 기준/ 상습·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3개 대유형으로 분류
- 여기서 대유형인 ‘일반적 기준’에 포함된 범죄는, 형법상 재물손괴등(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동법 제367조), 중손괴(동법 제368조 제1항), 폭처법상 공동손괴(제2조 제2항),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그 외 지정문화재 손상(제92조 제1항 및 제2항)인

데, 이를 또다시 네 가지 중소유형으로 나눔. 그와 함께 폭처법상 공동손괴는 여타 폭력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였고,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파괴(제94조) 역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며, 중손괴의 경우 1유형인 재물손괴등, 그리고 2유형인 공익건조물파괴에 대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였음

- 다만, 이처럼 일반양형인자의 하나로 취급하게 되면, 폭처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별도로 몇몇 손괴범죄에 관해서만 법률상 필요적 가중사유를 규정한 각 특별법의 취지가 흐려지는 단점이 있고, 나아가 중손괴죄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둔 별개의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양형인자의 하나로만 반영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전자의 경우, 서론 2번째 문단에서 지적한 것처럼 양형기준 일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므로, 향후 양형기준 일반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번 양형기준안에서 일반양형인자가 아닌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여 보다 뚜렷하게 처벌을 차등화한 점에서 수긍할 만한 부분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상습·누범·특수손괴’의 대유형은 다시 세 가지 중소유형으로 나뉘는데, 형법상 특수공익건조물파괴(제369조 제2항)을 1유형인 상습·누범·특수손괴 등에 포함시켰고, 3유형인 문화재특수손상의 형량범위를 설정할 때 국가지정문화재(3년 이상) 및 그 외 지정문화재(2년 이상)을 하나의 유형으로 포괄한 것은, 양형기준의 단순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적절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도 형법상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를 별도의 구성요건을 둔 취지가 흐려진 것은 다소 아쉬운 점임.
- 형량범위에 관하여
 - 각 유형에 따른 형량범위를 정할 때, 그간의 실제 판결결과에 따른 형량분포를 고려하고, 실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의 양형기준, 법정형에 따른 입법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였는데, 대부분 적절한 결론을 낸 것으로 판단함

- 다만, 대유형인 상습·누범·특수 손괴 유형의 중소유형 중 하나인 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의 경우 기본영역을 '8월~1년 6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사건이 다수 존재하였던 유형으로 실무에서 양형기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를 통해 규범적 상향 차원에서 하한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하나(설명자료 27쪽), 기본영역 하한을 8월로 정한 것은 유사범죄인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기본영역 하한이 6월인 것에 비할 때 상향조정된 결과이므로, 개별사안별로는 자칫 과도한 형량을 이끌어낼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함. 이 부분 규범적 고려의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양형인자에 관하여
 -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구분, 그리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구분이 있음은 통상적인 양형기준과 같고, 그 내용도 유사범죄와 대동소이함. 이는 적절한 비교 끝에 양형인자를 분류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의도 대부분 적절하다고 생각함
 - 다만 양형인자의 정의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지적하겠음
 - ▶ 첫째,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라 하나,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설명 내지 근거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개인적 피해, 사회적 피해라는 용어가 비록 구성요건은 아니나, 양형인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둘째,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그 범행동기의 하나로서 언급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실제 사건의 내용에 근거를 둔 것으로 추측되는 개별적·특수적인 범행동기를 손괴범죄 일반에 관한 양형인자의 정의로서 논하는 것은 다소 어색함. 따라서 그 근

거나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나아가 김태명 전 북대학교 법전원 교수님께서 제9차 공청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난 할 만한 범행동기’라는 가중요소 자체를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2014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결과 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평가,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1쪽 참조)

- ▶ 셋째, ‘경미한 상해’와 ‘중한 상해’를 정의하면서 전자의 경우 치료기간의 정도를 명시(2주 이하)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않았는데(설명자료 50쪽), 살인, 체포·감금 범죄의 양형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삭제한 것이라 하여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지만, 근거 내지 이유를 보다 상세히 밝혀 줄 필요가 있음

▪ 기타

- 집행유예 기준 등 그 외의 항목에 대해 이견 없음

다. 법무부

① 일반적 기준

○ 형량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기준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 검토 의견

- 중손괴는 공익건조물파괴보다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이 높고,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범죄의 결과적가중범임에도 별도 유형으로 설정되지 않았는바, 별도 유형으로 규정함이 타당

- 제3유형과 제4유형은 감경·기본·가중 3개 영역의 교집합인 형량이 존재하는바(3유형은 징역 2년 6월, 4유형은 3년), 이러한 경우 사실상 유형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각각 '3년 ~ 5년(제3유형)', '3년 6월 ~ 7년(제4유형)'으로 변경함이 상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이견 없음

② 상습·누범·특수손괴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이견 없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일반적 기준' 유형의 손괴죄와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

※ 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 경미한 경우, △처음부터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은 경우(3유형)

- 상습·누범·특수손괴의 죄질과 태양을 고려할 때 실제 이와 같은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자들을 발굴하여 수정할 필요 있음

③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기준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6년	5년-8년	7년-10년

- 검토 의견

- 제3유형(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은 법정형이 중하고 문화재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과 관리자에 대한 신체적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 ※ (법정형) △문화재특수손상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이견 없음

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등에 나타난 그대상범죄의 적용대상이나, 그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그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등은 최근 세간에서 관심을 가졌던 관련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으로 적정하게 설정되었고, 그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원칙도 준수하였다고 보여짐
- 또한 위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을 설정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짐

- 이에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다고 사료됨

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손괴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 동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여러 범죄유형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맥락에서 손괴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대의견 없음.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됨
- 중손괴(형법 제368조 제1항) 분류 재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형법 제368조는 ‘중손괴’라는 표제 하에, 재물손괴죄(제366조) 또는 공익건조물 파괴의 죄(제367조)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그리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68조 제1항 및 제2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괴범죄 양형기준은 제368조 제2항의 경우만을 3번째 기준(“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으로 분류하고, 제368조 제1항은 단지 1번째 기준(일반적 기준) 가운데 특별양형인자가 가중요소로만 고려하는 것은 형법 제368조(중손괴)라는 특별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로 창설한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무시한 것으로 생각

됨.

- 요컨대, 형법 제368조 제1항(중손괴)이라는 특별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68조 제1항 규정을 - 이와 같은 특별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은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와 동등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의 감경영역(4월-10월) 하한 삭제
 - 당구장이나 문구점의 한 공간을 임차하여 게임기 1대를 놓고 하는 소규모 영업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한을 징역 4월로 한다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임
 - 2유형의 환전 등 행위는 본건 유형보다 수익 규모가 더 클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하한이 없는 것과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
 - '5. 무허가·무등록 영업 중 사행행위 영업'의 2유형인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감경영역의 하한이 없음. 그런데 이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사행행위 영업의 감경영역은 하한이 없는 '-8월'로 되는 것에 반하여, 본건 유형인 허가를 받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성营业을 하는 경우에는 '4월-10월'로 형이 더 무겁게 되므로, 본건 유형도 하한을 삭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으로 보임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각 구성요건에 특유한 고유의 양형인자가 개별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 다양한 행위의 구성요건을 일괄적으로 한 개의 처벌규정(법정형 동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의하면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 그런데 사행행위를 직접 한 사람과 이를 방치한 사람은 행위의 가벌성이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데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므로, 양형인자에서 이러한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양형인자에서도 위 행위에 대한 구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호, 제4호, 제7호도 전혀 다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형기준에서 위 각호의 구별 없이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이라는 대범주 하에서 일괄적으로 양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의 개념정의 모호
- ‘매우 큰 경우’라는 것이 대충 얼마 정도를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재판부마다 적용례가 다를 것임. 금액기준으로라도 대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수인이 역할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인자의 정의규정 마련 필요
- 속칭 ‘바지사장’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을 ‘바지사장’ 명의로 함으로써 사실상 게임물 범죄의 책임을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양형인자의 정의를 통해 어느 정도 당사자별 처벌의 가이드라인이 형성되면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관련 ‘단속 후 해외 도피나 도피시도’를 특별가중인자 또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 인터넷 망을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이용하고 해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 우려가 있거나 단속 직후에 해외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관련 실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추가할 필요
 - 당구장이나 문구점의 한 공간을 임차하여 게임기 1대를 놓고 소규모로 영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안대로라면 감경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그 수익이 적어 비난가능성이 적으므로, 별도의 감경사유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의 일반가중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조정할 필요
 - 관계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수량이 적은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특별감경인자인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를 삭제하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대한 의견

- 집행유예 기준에서 주요 참작사유(긍정적)로서 ‘단순가담’, 일반 참작사유(긍정적)로서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을 두고 있는데 그 의미의 차이가 불분명함

나.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방법에 따른 해당 구성요건의 배치에 대한 의견

-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은 법정형을 고려하여 구성 요건별로 5개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채택된 분류 방법이 형량범위를 정할 때 기본유형을 상정하고 형량범위를 가감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과 법정형 및 구성요건의 다양성을 감안한 점은 충분히 수긍이 가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다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형량범위를 정하고 양형인자를 설정

하기 위해 구체적 타당성은 확보하였으나, 행위유형별로 동종 범죄의 형량과 비교 검토하여 양형기준을 통일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사해행위 주재 및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유통으로 대분류하고 양형인자 및 법정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요건 유형 및 법정형에 따라 중소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 좀 더 이해에 쉽지 않을까 생각함(별첨 예시 참조)

○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첫째, 제시된 양형기준에서는 형량 범위와 관련해 유사스포츠 토트가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범죄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음(8월~2년). 범죄 유형이나 죄질을 고려할 때 도박장소 개설 등 범죄의 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유사스포츠 토트, 유사경륜, 유사경마 등의 기본 영역의 형량 범위가 달라질 이유는 없으므로,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는 8월~1년 6월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 밖의 형량 범위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둘째,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기준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임. 물론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와 관련해 감경영역의 하한을 정하지 않은 범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이번 공청회 안에서 다루어지는 게임물범죄 등은 결국 수익을 목적으로 영업적으로 수행하는 범죄들이 대부분이어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죄질이 아주 가벼운 경우도 없지 않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에 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양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사실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됨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도박장소 개설, 불법 스포츠 도박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몇 해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해외 연계 범죄, 즉, '범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지른 경우'를 포

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함.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와 겹칠 수는 있겠으나, 형사사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국인을 상대로 해외와 연계해 국제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익이나 영업규모가 큰 것과는 다른 불법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한 것은 타당하나,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도금,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 또는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관여 공범의 수는 도박 범죄의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의미하므로, 양형에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의 3유형(도박장소, 공간 개설) 중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도박장(도박공간 개설),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의 유형은 범죄수익 규모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오프라인 범죄에서는 모은 금품/범죄수익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할 경우 어느 정도가 ‘매우 큰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해 현재 공청회 안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위 양형인자 정의 규정은 관련 평가 요소들은 비교적 잘 배치하고 있

<현재의 안>

마.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금, 배팅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 또는 환전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모은 금품에서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게임물 이용자,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 도박 등 참가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

우 많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으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판단기준이 추상적임. 예를 들어 범죄 수익액 기준으로는 1억 원 이상, 모은 금품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 장기간의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또는 범죄횟수가 일정 회수 이상, 도박 참가자의 숫자가 ***명 이상 중 몇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로 본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임.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PC 등의 설치 또는 제조·판매 대수가 매우 많은 경우, 또는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역시 어느 정도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행성 범죄 수사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계량화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규범적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추상적인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 양형인자로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앞서 영업규모가 큰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영업규모가 크지 않아도 오랜 기간 영업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양형인자의 평가 원칙 중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①의 단서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인자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임. 그 외 나머지 사항은 모두 찬성

〈별첨 예시〉 게임물범죄 등 유형 분류

다음 예시 분류방안은 공청회 대상 게임물범죄 등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한 현재의 안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변형한 방안임. 공청회 제시안과 분류상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첫째, 행위유형을 사행행위의 주재와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 유통 등 2가지로 대분류하고 그 아래 구성요건 유형별로 중소유형 분류를 하였음. 행위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형량범위 및 양형 기준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음. 그러나 아래의 방안도 공청회 대상 게임물범죄 등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한 공청회 안과 실질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내용적으로는 다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을 거의 그대로 따랐음. 이에 따라 양형인자와 관련된 공청회안의 기준은 약간만 손을 보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둘째, 복권 발행의 경우 사행행위 주재의 중분류 (2)로 분류한 것은 해당 유형의 범죄들이 일반인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임

셋째, 공청회 안의 무허가·무등록 영업 중 게임제작배급업이나 사행기구제조판매업은 대분류의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 유통 등’ 중 한 가지 유형으로 포섭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비슷한 다른 법률의 범죄유형의 양형과 비교할 때 직관적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음

가. 사행행위의 주재

(1)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	사행법 30조 1항1호	5년 ↓, 5000만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무허가 카지노업	관광 진흥법 81조1호	5년 ↓, 5000만 ↓			
2	도박장소·공 간 개설	영리 목적 도박 장소·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	5년 ↓, 3000만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2) 복권, 유사경마, 유사스포츠토토, 유사경륜·경정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	-----	------	------	-----	----	----	----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발행, 복표발매·중 개	복권 발행	복권법 34조 1항1호	3년 ↓, 2000만 ↓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	형법 248조 1항	5년 ↓, 3000만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를 중개	형법 248조 2항	3년 ↓, 2000만 ↓			
2	유사경륜· 경정 등	승자투표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경주 시행 등	경륜· 경정법 27조 1항1호, 제24조	3년 ↓, 1000만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우권 등 발매, 적중자에게 금전 지급하는 소싸움 시행	전통소 싸움법 26조 1항1호	3년 ↓, 2000만 ↓			
3	유사경마	경마 시행	한국 마사회법 50조1호, 48조1항	5년 ↓, 5000만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재물 등 지급	한국 마사회법 50조1호, 48조2항1호	5년 ↓, 5000만 ↓			
		외국 경주에 전자적 방법 이용 승마투표행위 등	한국 마사회법 50조1호, 48조 3항2호	5년 ↓, 5000만 ↓			
4	유사스포츠 토토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국민체육진 흥법 47조2호, 26조1항	7년 ↓, 7000만 ↓	4월 - 10월	8월 - 1년6월 ⁹⁾	1년 - 4년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 이용제공	국민체육진 흥법 48조4호, 26조 2항1호	5년 ↓, 5000만 ↓			

9) 유사스포츠토토의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는 다른 동종 범죄들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5조4호, 32조1항2호	2년 ↓, 2000만 ↓	- 8월	6월 - 1년 2월	10월 - 2년
2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게임법 44조 1항2호, 32조 1항7호	5년 ↓, 5000만 ↓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도박·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게임법 44조 1항1호, 28조2호	5년 ↓, 5000만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 1항2호, 32조 1항1호	5년 ↓, 5000만 ↓			
		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 1항2호, 32조 1항4호	5년 ↓, 5000만 ↓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경품제공 등 사행성 조장	게임법 44조1항1의2호, 28조3호	5년 ↓, 5000만 ↓			

(4)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제공업	무허가·무등록 게임제공업	게임법 45조2호, 26조1항, 2항, 3항	2년 ↓, 2000만 ↓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사행행위 영업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사행법 30조 2항1호	3년 ↓, 2000만 ↓	- 8월	6월 - 1년 4월	10월 - 2년

나. 사행행위 도구 등 제조·유통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게임제작·배급업	무등록 게임제작·배급업	게임법 45조2호, 25조	2년 ↓, 2000만 ↓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5조4호, 32조 1항2호	2년 ↓, 2000만 ↓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3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사행법 30조2항3 호	3년 ↓, 2000만 ↓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4	미등급·사행성 게임물, 사행성유기기 구, 온라인스포츠 토토발행시스 템	미등급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 1항2호, 32조 1항1호	5년 ↓, 5000만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사행성 게임물 유통, 이를 위한 진열·보관	게임법 44조 1항2호, 32조 1항4호	5년 ↓, 5000만 ↓			
		투전기, 사행성유기 기구 판매, 판매 목적 제조·수입	사행법 30조 1항2호	5년 ↓, 5000만 ↓			
		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국민체육 진흥법 48조4호, 26조 2항1호	5년 ↓, 5000만 ↓			

다. 법무부

○ 양형분류 표제에 대한 의견

- 일반적으로 “게임물범죄”라고 하면 사행성 게임보다는 온·오프라인상 게임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게임물범죄”라는 양형기준안 표제는 부적절함

-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사행성게임물’ 또는 ‘도박게임물’ 등으로 특정함이 바람직

○ 불법게임물 유통 등

▪ 기준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8월	6월-1년2월	10월-2년
2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유기기구, 온라인스포츠토토발행시스템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6월

▪ 검토 의견

-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제2유형 ‘온라인스포츠토토발행시스템’ 설계·제작·유통은 「불법 스포츠도박 등」의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공중 이용 제공과 구성요건과 죄질이 유사하므로 두 유형의 형량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 있음

※ 위 두 범죄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적용법조 및 법정형 동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스포츠도박 등」 범죄의 유형분류 기준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사경륜·경정 등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유사경마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6월
3	유사스포츠토토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기준안

▪ 검토 의견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2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제2유형 관련, 감경영역의 상한이 10월 이상인 경우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선고시 하한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하한을 4월로 설정함이 상당
- ▶ 제2유형은 실제 빈번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양형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 존재

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등에 나타난 그 대상범죄의 적용대상이나, 그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그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원칙 등은 최근 세간에서 관심을 가졌던 관련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그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원칙도 준수하였다고 보여짐

- 또한 위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을 설정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짐
- 이에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다고 사료됨

VI. 2015년도 양형위원회 제5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 2015. 1. 12.(월) 16:00 ~ 18: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양형위원회 제5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2. 참석 현황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자문위원 8인(김자혜, 박은정, 손동권, 오미영, 원혜옥, 정춘숙, 조벽, 홍은희)

3. 회의 내용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경과 보고 및 주요 내용 설명
- 자문 의견 청취

4. 자문의견 요약

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 (1) 장물의 ‘양도, 운반, 보관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장물범죄 양형기준안)

(가) 쟁점

- 장물의 ‘양도, 운반, 보관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은 장물의 ‘양도, 운반, 보관’에 대해 ‘취득, 취득알선’과 동일한 기준 설정

(나) 자문의견

- 감경인자 미설정(현행 안 유지) 의견

- 형법은 장물의 취득, 알선, 양도, 운반, 보관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임(다만, 일반감경인자로의 반영은 검토해볼 수 있음)
- 취득, 알선과 형량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행위불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균형량의 차이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정도로 크지 않으며, 형량분포의 차이는 다양한 다른 양형인자의 영향에 따른 것일 가능성 있음
- 다만, 향후 양형기준 시행과정에서 형량분포 차이의 유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 있음

(2) ‘다른 범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가) 쟁점

- 다른 범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은 이를 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지 않음

(나) 자문의견

- 감경인자 미설정(현행 안 유지) 의견
 - 다른 범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경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법조 경합 관계로 평가될 수 있고, 죄수관계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함
 - 다른 범죄군과 마찬가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 양형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을 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3) 온라인 범죄 유형에 한해 ‘모은 금품이나 범죄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안)

(가) 쟁점

- 특별가중인자인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도박공간개설, 불법스포츠도박 등' 온라인 범죄 유형에 한해 '모은 금품이나 범죄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은 온라인, 오프라인 범죄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모은 금품이나 범죄수익'에 관해 일반적, 추상적 기준 제시

(나) 자문의견

- 모든 유형에서 구체적 금액기준 미제시(현행 안 유지) 의견
 - 온·오프라인 범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온라인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금액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구체적 금액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역으로 그 기준 아래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 금액기준 설정에는 신중할 필요 있음
 -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까지의 양형사례만으로는 '모은 금품 10억 원, 범죄수익 5,000만 원'이 적절한 금액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향후 충분한 양형사례가 축적된 다음 구체적 금액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은 금품, 범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규모 등에 관해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범죄수익 등에 관해서도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 온라인 유형에 한해 구체적 금액기준 제시(현행 안 수정) 의견
 - 구체적 금액기준 제시가 가능한 온라인 범죄 유형에서만이라도 금액기준 제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 금액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일반가중인자인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가) 쟁점

- 일반가중인자인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
- 현행 양형기준안은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나) 자문의견

- 일반가중인자 반영(현행 안 유지) 의견
 - 공무원이 직무수행의 엄결성을 해치고 피고인과 결탁하였다는 점과 관련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중과 구별되어야 함
 - 피고인이 범죄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정도로 범행의 가벌성을 크게 높이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반가중인자 정도로 충분함
 - 행정법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식품·보건범죄와 조세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로만 설정한 것과의 균형상, 게임물범죄에서만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특별가중인자 반영(현행 안 수정) 의견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는 공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이 타당함
 -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위 양형인자가 일반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벌성에 비추어 오히려 그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게임물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에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수정할 필요 있음

V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87차	2015. 1. 26. 15:00	○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 괴,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VIII.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 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5. 2. 2. 양형위원회 제61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5. 2. 중순(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5. 2. 하순(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IX.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4. 12. 12.	○ 무죄 선고 시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 및 피고인의 사회공헌도를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2	2014. 12. 20.	○ 게시인이 당사자인 폭행사건의 기소, 불기소처분, 구형에 대한 문의 및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은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형은 유죄로 인정되는 사건에서만 선고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가 없는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의 사회공헌도를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소, 구형 등 검찰의 처분 및 판결에 대한 불복

등 개별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4. 11. 27.	○ 각 죄목별 양형기준표 요청
2	2015. 1. 7.	○ 우리나라 보험사기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강력사건과 관련되거나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그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큼. 현재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양형기준으로 처벌되고 있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일반 사기죄보다 가볍게 처벌되고 있음. 또한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현행 사기죄의 양형기준과는 별도로, 보험사기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요청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각 죄목별 양형기준표는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출력물 형태의 양형기준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를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여 ‘일반사기’ 유형보다 더 높은 형을 권고하고 있으며(이득액 1억 원 미만 기준, 일반사기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조직적 사기 기본영역 ‘1년6월 - 3년’), ‘일반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보험사기’의 경우에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여 위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 가중영역의 형량범위(이득액 1억 원 미만 기준 ‘1년 - 2년6월’)에서 출발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그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현행 사기죄의 양형기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귀 기관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